

한국기업을 위한 주요 인도 세무

[2014. 6. 27]

뉴델리사무소

1. 인도 세제 및 세무 관련 기관

□ Direct Tax(직접세) 및 Indirect Tax(간접세)

- (Direct Tax) 소득세 등 납세자가 정부 앞으로 직접 납입하는 세금으로 IT(Income Tax) Department에서 전담 관리하고 있음.
- (Indirect Tax) VAT, CST*, Service Tax 등 다양한 종류의 간접세 항목들이 존재하며, 인도 내 납세자들은 세금 납부 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앞으로도 간접세를 납부해야 함.

* CST : Central Sales Tax (중앙정부 앞 판매세)

□ 세무 관련 기관

-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 인도 내 외국인 투자 관련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 RBI(Reserve Bank of India)
: 인도 중앙은행으로써 모든 외화관련 거래를 모니터링·관리하는 기관
- ROC(Registrar of Companies)
: 인도 내 설립하는 일반회사/연락사무소/지사(지점)/프로젝트 사무소를 관리하는 기관
- SEBI(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 유가증권 등 인도 내 자본시장을 통제하는 기관

2. 인도 진출기업 형태 및 형태별 비교분석

□ 인도 내 진출기업 형태

-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 100% 한국의 모기업을 지분을 소유한 WOS(Wholly Owned Subsidiary) 또는 한국과 인도 간에 합작을 통해 지분을 분할 소유한 JV(Joint Venture)가 있음.
- (연락사무소) 영업활동 없이 본사와의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사무소로써, Liaison Office 또는 Representative Office라고 부르며, 주요업무는 사업기회 관련 정보 등을 취합하여 본사에 전달하고 인도 내 고객과 본사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함.
- (지사/지점) 지사는 BO(Branch Office)로 통칭되며, 특정 업무*에 한해 RBI의 승인에 따라 설립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같은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 허용 업무 : 물품 수출입, 컨설팅 제공, 연구활동, 기술협력, 모기업 판매 대행, IT 서비스 제공, 모기업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등
- (프로젝트 사무소) PO(Project Office)로 불리는 동 사무소는 인도 내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동 목적 이외에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음.

□ 형태별 비교분석

구 분	Company	LO	BO	PO
설립 허가기관	사전승인 불필요 /사후 ROC 등록	RBI 사전승인 필요	RBI 사전승인 필요	사전승인 불필요
활동 범위	제한 없음	영업활동 불가	모기업과 동일한 영업활동 가능	특정 프로젝트 관련 활동만 가능
과세 기준	인도 국내 기업과 동일	과세 대상 아님	외국기업으로 과세	외국기업으로 과세
과세율	30%	N.A.	40%	40%
최소자본금	[개인회사] 최소 INR 10만 [주식회사] 최소 INR 50만	기준 없음	기준 없음	기준 없음
주주 및 임원	[개인기업] 주주 및 임원 각각 최소 2명 [주식회사] 주주 최소 7명 임원 최소 3명	1명 이상의 정식 대표자	1명 이상의 정식 대표자	1명 이상의 정식 대표자
설립 소요기간	3~4주	16~18주	16~18주	16~18주